

『구미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안장환 의원

2.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의 변경 및 수정에 따라 내용을 개정하고, 용어정리, 오·탈자 수정 등으로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변경
 - 「구미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구미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 상위법 변경(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8조제2항, 안 제12조, 안 제27조)
 - 「수질환경보전법」,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건설업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제명, 안 제1조~제12조, 안 제14조~제17조, 안 제19~제24조, 안 제26~27조, 안 제29조, 안 제31조)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 예산관련 : 해당없음
- 부서의견 : 해당없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식[별표 1~3, 별지 1~6]

5. 검토의견

- ☐ 본 ‘구미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은
 - 당초의 조례 제정 근거 법률인 「수질환경보전법」이 폐지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명 변경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리, 기타 오탈자 수정 등으로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